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93호 2022. 8. 25.(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176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시행계획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174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사천시 공고 제2022-1175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고시 제2022-176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사업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14,967백만원(국비 10,477, 도비1,347, 시비 3,143)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영북항 : 방파제 설치, 주차장 설치, 안전휀스 설치
- 광포항 : 부잔교 확충
- 산분령항 : 물양장 설치

· 실안항 : 방파제 확충, 계류장 설치, 물양장 설치, 어구보관창고 설치

- 특화사업

· 산분령항 : 다목적회관

- S/W사업 :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마을 브랜드 개발 등

○ 사업의 구역 : 사천시 실안동 신4-1번지 영북항 외3개항(광포항,산분령항,실안항)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5. 사업예정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6. 사업의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
-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9. 기 타

시행계획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실안동	1187-3	잡	1,694	800	사천시					
실안동	875-21	잡	1,579	400	해양수산부					
실안동	1187-2	도	1,642	45	국토교통부					
실안동	1096-41	잡	200	200	사천시					
실안동	1096-51	잡	550.0	550.0	해양수산부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174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의2)

나. 조례제명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01,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의2)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나. 제명 변경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 관내”를 “사천시”로, “설치·운용에 관하여”를 “설치 및 운용에”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제5조제1항 중 “시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6조의1을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 관내</u>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u>설치·운용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u>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수급자”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 <u>시장</u>은 장학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u>다음 각 호를</u> 재원으로 한다.</p> <p>1. <u>시 출연금</u></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u>사천시</u>----- ----- ----- ----- ----- <u>설치 및 운용에</u> ----- <u>규정함</u>-----.</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p>1.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재원) ----- -----.</p> <p>1.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출</u></p>

2.·3.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 관
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긴급구호
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
하는 데 사용한다.

② (생략)

제6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
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
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
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연금

2.·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시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삭 제>

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
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지방
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공고 제2022-1175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개정에 따른 목적의 인용 조례 개정(안 제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01, FAX: 831-6022)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개정에 따른 목적의 인용 조례 개정(안 제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9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로, “실기관련대회” 를 “실기 관련 대회” 로,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u>」(이하 “<u>조례</u>”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수급자</u>”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u>조례</u> 제14조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u>실기관련대회</u> 입상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u>시장</u>이 정한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 <삭 제></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u>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이하 “<u>조례</u>” 라 한다) ----- ----- <u>실기 관련 대회</u> ----- ----- <u>사천시 시장</u>(이하 “<u>시장</u>” 이라 한다)----- -----.</p> <p>②·③ (현행과 같음)</p>